

특허청 일반직공무원 6급(심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변리사)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을 주도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9년 5월 9일
특허청장

1. 재공고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9개 직위, 총 9명)

| 임용예정 직급 | 직류 | 선발 인원 | 직무분야 | 지원 코드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
| 공업주사 | 기계 | 1명 | 기계 분야(기계, 항공, 조선) 특실심사 | B-1 | 특허심사기획·1·2·3국 (대전) |
| | 전기 | 1명 | 전기 분야(전기, 전자, 제어) 특실심사 | C-1 | |
| | | 1명 | 전기 분야(전기, 전자, 제어) 특실심사 | C-2 | |
| | | 1명 | 전기 분야(재료분석) 특실심사 | C-4 | |
| | 전자 | 1명 | 전자 분야(고집적메모리, 반도체) 특실심사 | D-1 | |
| | 조선 | 1명 | 조선 분야(조선, 해양플랜트) 특실심사 | E-1 | |
| | 금속 | 1명 | 금속 분야(금속재료, 금속가공) 특실심사 | F-1 | |
| 의료기술 주사 | 의료기술 | 1명 | 의료기술(의료기기, 의공학) 분야 특실심사 | J-1 | |
| 환경주사 | 일반환경 | 1명 | 환경 분야(수질, 대기, 폐기물 처리기술) 특실심사 | L-1 | |

- ※ 「특허청 공고 제2019-86호」의 재공고
-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지원자가 없는 분야에 한해 재공고를 실시
- ※ 이미 해당 분야에 지원한 응시자는 추가 지원할 필요 없음
- ※ 기존 지원자 추가 지원 불가(재공고로 추가 지원 시 중복지원 처리)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20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은 응시 가능)

나. 개별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 :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붙임1]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변리사)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 기준으로 판단함
 - ※ 면접예정일(재공고분야) : '19.6.19.~20. 예정
 - ※ 우대요건(응시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19.5.3.)을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변리사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서류전형 위원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적격자로 합격임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전문성 및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방식 : 대면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평가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함
 - ※ 기타 상세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 전형(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 일정

- 우편접수 : '19. 5. 9.(목) ~ '19. 5. 24.(금)
- 서울현장접수 : '19. 5. 20.(월) ~ '19. 5. 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19. 6. 10.(월)
- 면접시험 예정일(재공고분야) : '19. 6. 19.(수) ~ '19. 6. 20.(목)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일 : '19. 7. 5.(금)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에 게재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
- ※ 임용일은 서류검증, 신원조사 등 임용관계서류 확인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서류접수기간 : 2019. 5. 9.(목) ~ 2019. 5. 24.(금)

- ※ 방문접수(5.20.~5.24.)는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
-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채용정보 : <http://gojob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원서접수처

- 등기우편접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담당 (“일반직공무원 6급 응시원서 재중”임을 표시)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서울 방문접수 : 특허청 서울사무소 3층 원서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3층
 -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찾아오시는 길 참고

다. 접수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직접제출)
 - ※ 택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하여야 함
- 현장접수(방문접수) 기간은 5. 20.(월)~5. 24.(금)이며, 접수기간 중 업무시간 (09:00~18:00) 내에 제출 가능
 -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공고일부터 마감일(5.24.) 18:00까지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표 회송에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 또는 선납 라벨을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응시표를 송부 하지 않으며, 미수령자는 서류전형에 합격할 경우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배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응시수수료 포함)

-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채용정보 : <http://gojob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 응시수수료(7,000원) :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기본서류

- [붙임2] 서류 제출 안내문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정확히 제출

8.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지원코드(A-1, B-1, B-2, C-1, D-1 등)에만 지원 가능합니다.(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등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사.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아.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시험 종료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자.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전형(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042-481-5432, hamburger8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붙임2> 서류제출 안내문 및 별지서식

<붙임3> 공인영어성적 평정기준

<붙임1>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별도 붙임1 문서 참조

<붙임2> 서류제출 안내문 및 별지서식

별도 붙임2 문서 참조

<붙임3> 공인영어성적 평정기준

| 기준 | 토 플(TOEFL) | | 토익 (TOEIC) | 텡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 | PBT | IBT | | | | |
| 상 | 590점 이상 | 97점 이상 | 870점 이상 | 800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 Level 2의 88점 이상 | 800점 이상 |
| | | | | 452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 | |
| 중 | 567점 이상 | 86점 이상 | 790점 이상 | 700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 Level 2의 77점 이상 | 700점 이상 |
| | | | | 385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 | |
| 하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18.5.12. 전(前)시험)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 | | | 340점 이상 (‘18.5.12. 이후 시험) | | |

- ※ 상기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19. 5. 3.) 기준으로 증빙가능하고, 최종시험(면접) 기준(‘19. 6. 18.~20.) 유효한 성적에 한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점수 1개만 인정
- ※ 영어시험별 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17. 6. 18.~20.) 이후 시험분만 유효
- ※ 영어성적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